

The Faculty of Canon Law

교회법대학원 요람

2018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목 차

I.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5
1. 연혁 / 6	
2. 직제 및 구성 / 6	
3. 학사일정 / 7	
II. 학칙 및 세칙	9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 11	
2.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 30	
3.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39	
III. 학사관리	41
1. 학기별 주요 학사제도 안내 / 42	
2. 기본이수학점 / 42	
3. 종합시험 / 43	
4. 석사학위청구논문 / 43	
5. 수강신청 / 44	
6. 등록금 반환 / 44	
7. 장학금 제도 / 45	
8. 학교생활 안내 / 45	

IV. 교회법대학원 전공 및 교과과정 52

- 1. 전공 소개 / 53**
- 2. 교과과정 / 53**

V. 부 록 57

- 1.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 58**
- 2. 성심교정 배치도 / 73**

- The Faculty of Canon Law -

I.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1. 연혁
2. 직제 및 구성
3. 학사일정

1. 연 혜

시기	내용
2017. 3.	- 석사과정 입학정원 12명 교회법학과 전공 설치 및 개원 - 초대 교회법대학원장으로 한영만 신부 취임

2. 직제 및 구성

(1) 교회법대학원 직제

직 위	성 명
교회법대학원장	한 영 만
교회법대학원 교학팀	정 다 울

(2) 교회법대학원 운영위원회

직 책	성 명
위원장	한 영 만
위 원	최준규, 박정만, 서한석, 안세환

3. 학사일정

2018학년도 1학기

2018학년도 2학기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9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II. 학칙 및 세칙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2.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3.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03. 9. 1

개정 2018. 1.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교 교육이념에 따라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회인,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공헌하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호의 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7.9.1, 2009.3.1., 2012.5.3., 2014.11.22>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임상치과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생명대학원, 교회법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 <개정 2017.01.25., 2017.9.22>

3. 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제3조(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에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3.1>

② 일반대학원에 2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3조의2(계약학과) ①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1]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1, 2009.3.1, 2013.10.8>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②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은 약간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통합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대학원 학과(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 외에 추가로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④ 본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휴직을 조건으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방법은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구술시험등으로 시행한다.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 2006.9.1>

제9조(입학전공분야)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개설된 학과(전공) 중 입학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학과(전공)별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3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13조(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의 정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의 허용된 수료기간을 말한다.

제1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소속 학과의 통합과정 및 성의교정 소속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심교정 통합과정은 1년 이내, 성의교정 박사과정은 6월 이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9.1, 2009.3.1, 2009.11.24, 2012.10.1, 2012.11.28, 2011.3.1., 2014.3.25., 2016.3.1.>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 통합과정 4년. 단, 박사학위과정 융복합의과학과 및 성심교정 소속학과 2년 <개정 2014.3.25., 2016.6.21., 2017.1.25.>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5학기). 단,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생명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2년(4학기), 교회법대학원 3년(6학기), 교육대학원 2년(4학기)

이상 <개정 2014.11.22, 2017.1.25, 2017.9.22, 2017.11.22>

3. 전문대학원 : 별도로 정함

②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및 성의교정 학사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3.25., 2016.3.1.>

제15조(재학년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3.1., 2016.6.21., 2017.1.25.>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3년, 박사학위과정 5년, 통합과정 7년

2.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4년, 단, 교회법대학원은 4년 6개월

3. 전문대학원 : 별도로 정함

② 재학년한은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년한을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등록·휴학·복학 및 제적

제1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휴학) ① 병역, 임신·출산,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9.3.1., 2016.3.22>

②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병역,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제18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의 1/4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5장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20조(교과과정)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1조(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제23조(유효성적과 수료성적) ① 학업성적이 C°이상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각 대학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성적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단,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09.3.1>

제24조(수료인정 및 최소이수학점) ① 제14조에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신학과는 36학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임상치과학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은 26학점, 교회음악대학원은 35학점, 교회법대학원은 75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1.10.18., 2013.10.8., 2016.6.21., 2017.1.25.>

③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

점중 인정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 ④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단, 성심교정 소속 학과의 경우 5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3.1..>
- ⑤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25조(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이 일반대학원 개설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수강 대상 및 자격, 학점인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③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시행세칙 및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14조에서 정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학.군제휴 대학 및 군내 교육기관간 학점교류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

- ④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6장 논문 및 학위수여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원 특성에 따라 다른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이 행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③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09.3.1>

제29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서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

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단, 전문대학원의 학위수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3.1>

②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의 수여) 본교는 타 대학교(외국대학 포함)와의 협약에 의하여 복수학위(Dual Degree) 또는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1.>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제3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

제7장 연구과정

제33조(설치목적) 대학원에 특수한 과목 또는 과제의 수업에 출석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의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제34조(입학) ①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는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5조(수업년한) 연구과정의 수업년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수료) ① 연구과정 수료자에게는 그 연구 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시 인정되지 않는다.

제8장 공개강좌

- 제37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에 교양,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연구상의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또는 강좌명,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총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8조(학생지도) 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교학부장,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전공책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또는 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따로 정한다.
③ 군위탁생의 경우 등록금의 50%(입학금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3.1>

제40조(징계) ① 대학원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1조(조직) ① 일반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성심대학원장 및 교정별 교학부장을 둔다. <개정 2017.9.22>

- ② 각 특수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부장을 둔다.
③ 전문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신설 2009.3.1>
④ 대학원에는 학과(전공)마다 1인의 주임교수(책임교수)와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⑤ 대학원에는 사무를 수행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대학원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대학원위원회 및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1>

- ②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1>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각 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준용규정) 수업일수, 휴업일등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세칙의 제정)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 대학원학칙, 산업보건대학원학칙, 사회복지대학원학칙, 심리상담대학원학칙, 의료경영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행정대학원학칙, 임상치과학대학원학칙, 임상간호대학원학칙, 문화영성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교회음악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본 학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제3항, 제37조, 별표1, 별표2)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일반대학원 입학정원의 총정원제(별표1)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24조②, 별표1, 별표2)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산업보건대학원 각 전공의 재적생은 전공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국제학과 재적생은 전과하지 않는 한 학위 수여때까지 동 학과 소속을 유지한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문화영성대학원 각 전공의 재적생은 학과체제로의 변경에 따라 문화영성학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대학원 심미수복치과학과의 재적생은 학과명칭변경에 따라 치과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간호대학원 감염간호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감염관리간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 2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학과·전공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과의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면역·미생물학, 신경생물학, 종양생물학 전공의 재적생과 의과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생명의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의학과의 의학세포생물학, 생명의과학 전공을 수료한 학생과

의과학협동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 ③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IT전공) 학위는 2004학년도후기 졸업자부터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2)은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보건대학원 역학및 보건통계학전공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역학및임상시험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상담심리대학원 영성심리상담학과의 재적생은 전공 명칭변경에 따라 영성상담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4조 별표1, 별표2)은 2005년 10월1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8조, 제26조, 제39조)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4조, 제8조, 별표1, 별표2)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학위종별은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제2조, 제4조 별표1, 별표2, 제14조1항2호)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대학원의 수업년한 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문화영성대학원 문화영성학과 세부전공은 201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 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치) ①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임상치과학대학원 치과보철학과의 재적생은 학과 명칭 변경에 따라 보존보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전공, 영양교육 전공, 교육공학 전공 재적생은 전공이 폐지되더라도 개정전 본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1항 1항 1호 및 별표 1)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학통계학과 재적생은 개정전 본 학칙에 규정된 학과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2017 교회법대학원 요람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제6조 제4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 2)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 제24조)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2)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문화영성대학원 입학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명 및 학위명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생명의과학과 재적생은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의생명·건강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별표 1, 별표 2)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보학전공 재적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별표2, 별표4)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
하되,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4조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특수대학원 통합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5학
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한류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융합대학원 내의 학과(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7.>

제3조(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에 의하여 글로벌융합대학원
수업연한이 2년(4학기)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학칙 변경 당시 행정대학원에 재적하
고 있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신설 201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4)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5월 15일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24조, 제32조, 별표 1, 별표 4)은 2016년 3월 1일부
터 시행하되, 별 표 4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7조)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1, 별표2)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료정책학전공 및 의료경영정보학전공 재학생은 변경 전 학칙에 명시된 전공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별표1, 별표2)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 3)은 201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위한 경과조치) 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
② 구 학칙 시행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을 별표 3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1조, 별표 4)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4조, 별표2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 글로벌융합대학원 분리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융합대학원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해당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 행정학과는 행정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4조, 별표 1, 별표 2)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교육학박사 신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제14조의 사회복지대학원 수업연한 및 별표 2의 사회복지대학원 설치학과·전공 및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과 재적생은 졸업까지 해당 학과 학적을 유지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별표2)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0.1., 2014.3.25., 2015.3.1., 2016.3.1., 2016.6.21., 2016.10.7. 2017.1.25., 2017.9.22., 2017.11.22>

2014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일학정원	학 과	학위종별	일학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40	신학과(통합)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회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86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독서학과	문학석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16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7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 박사	
총계	36개 학과		303	27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1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일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일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4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불리학과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독서학과	문학석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11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7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총계	36개 학과		298	27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4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86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독서학과	문학석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11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7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총계	36개 학과		298	27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4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86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약학과	약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독서학과	문학석사				
성의	의학교육학과	의학교육학석사	111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177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통합)	의학박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	이학석사		의생명 · 건강과학과(통합)	이학박사	
협동과정 (학과간)				융복합의과학과	이학박사	
총계	36개 학과		298	27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교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학 과	학위종별	입학 정원
성신	신학과	신학석사	50	신학과	신학박사	5
성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147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불어불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통합)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국사학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종교학과	문학박사	
	일어일본문화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문학박사	
	국사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통합)	문학박사	
	종교학과	문학석사		심리학과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경영학과(통합)	경영학박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행정학과(통합)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문학석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사회학과	문학석사		화학과(통합)	이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생명과학과(통합)	이학박사	
	국제학과	정치학석사		물리학과(통합)	이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생활문화학과	이학박사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컴퓨터공학과(통합)	공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통합)	공학박사	
	수학과	이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통합)	공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약학과(통합)	약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소비자주거학과	이학석사				
	의류학과	이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보통신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디지털미디어학과	공학석사				
	음악과	음악학석사				
	아동학과	이학석사				
	악학과	악학석사				
협동과정 (학과간)	독서학과	문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성의	의학 교육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의생명 · 건강과학과	의학교육학석사 간호학석사 의학석사 이학석사	111	간호학과 보건학과 의학과(통합) 의생명 · 건강과학과(통합) 융복합의과학과	간호학박사 보건학박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177
협동과정 (학과간)				생명윤리학과	생명윤리학 박사	
총계	36개 학과		308	27개 학과		268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2017
교회법대학원 요람

[별표 2] <개정 2012.5.3., 2012.11.28., 2014.3.1., 2015.3.1., 2014.11.22., 2016.10.7., 2017.1.25., 2017.9.22., 2017.11.22., 2018.1.8.>

2017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학과 장애인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청소년복지) 사회복지학석사(장애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85
상담심리 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80
의료경영 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리더십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리더십)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0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28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0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2개 대학원		567	

2018학년도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보건대학원	산업 및 환경보건학전공 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전공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건강증진학전공 보건정보학전공 역학 및 임상시험학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학전공 국제보건학전공	보건학석사(산업 및 환경보건학) 보건학석사(인간공학 및 재활보건학) 보건학석사(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보건학석사(건강증진학) 보건학석사(보건정보학) 보건학석사(역학 및 임상시험학) 보건학석사(보건정책 및 관리학) 보건학석사(국제보건학)	65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정신건강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의료사회복지) 사회복지학석사(노인복지) 사회복지학석사(정신건강복지)	75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영성상담학과 아동상담학과 조직상담학과	상담심리학석사(상담) 상담심리학석사(영성상담) 상담심리학석사(아동상담) 상담심리학석사(조직상담)	80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의료경영)	40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및 리더십전공 국어교육전공 주니어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직업특수교육전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및 리더십)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교육학석사(특수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교육학석사(독서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교육학석사(직업특수교육) 교육학석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10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특별과정)
	학과전공	학위종별	인학 정원	
임상치과학 대학원	보존보철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의학석사(보존보철학) 치의학석사(치과임프란트학) 치의학석사(치과교정학) 치의학석사(구강악안면외과학)	20	
임상간호 대학원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응급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종양간호전공 감염관리간호전공 호스피스간호전공	간호학석사(가정간호) 간호학석사(노인간호) 간호학석사(응급간호) 간호학석사(정신간호) 간호학석사(종양간호) 간호학석사(감염관리간호) 간호학석사(호스피스간호)	40	
문화영성 대학원	문화영성학과 문화영성전공	문화영성학석사(문화영성)	25	
교회음악 대학원	교회음악과 오르간전공 작곡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석사(오르간) 교회음악석사(작곡) 교회음악석사(합창지휘)	15	
생명 대학원	생명윤리학전공 생명문화학전공 임상연구윤리학전공	생명윤리학석사(생명윤리) 생명문화학석사(생명문화) 생명윤리학석사(임상연구윤리)	25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경영학)	28	최고경영자과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전공 의료 및 보건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학)	30	
교회법 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12	
계	12개 대학원		557	

[별표 3] <개정 2017.5.13.>

의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 과	학위종별	학 과	학위종별
의학전문 대학원	의학과	의무석사	의학과(통합)	의과학박사
총계	1개 대학원			

※ 「(통합)」은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있는 학과임.

[별표 4] <신설 2011.3.1, 개정 2011.12.6., 2015.11.10., 2016.3.1., 삭제 2017.9.22>

교회법대학원 학사시행세칙

제정 2017. 3. 24

개정 2017.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회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심사(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등록

제3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3.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5.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서류

제4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가능하다.

1. 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비신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2>

제4조의 2(예비과정) ① 제4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 대학원 예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비과정은 본교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과목을 제17조 제1항에서 언급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2>

제5조(입학전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다만, 전형방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사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학사정회를 갖는다.

제7조(합격통지서 발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8조(재입학) ① 대학원 학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재입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학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신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재입학생의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학적

제9조(학적 정의) ① 재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학기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는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② 휴학이라 함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③ 제적이라 함은 재학 또는 휴학 상태인자의 학적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④ 수료라 함은 학위 취득 자격을 갖춘자의 학적 상태를 말한다.

제10조(휴학) ① 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하여 휴학하고자 하는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하고자 하는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회수 및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납입금 반환)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원이 수리된 자는 ‘자퇴로 인한 제작’ 처리를 한다.

제13조(수료) ① 수료자는 학위 취득 전까지 매학기 정해진 논문지도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수료 완료 처리한다.

1.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논문 학위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한 자

제4장 교과과정,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점 및 성적

제1절 교과과정

제14조(교과과정) ① 본 대학원의 예비과정은 2년(4학기), 석사학위과정은 3년(6학기)¹⁾으로 한다.

② 각 과정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면개정 2017.11.22>

제14조의 2(교과과정 개편) 편성된 교과과정은 결정된 후 예비과정은 2년,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에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2>

제15조(학기별 교과목 개설) ① 학과장은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개설과목을 선정하고 종합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과목 담당교원)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교외의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2절 학점인정

제17조(학점인정) ① 제4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가 한국천주교회의 주교회의 산하 '기톨릭교리신학원' 및 수도자장상연합회 산하 '수도자신학원', 또는 각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된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2.>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0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외국어 과목을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2.>

③ 제2항의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의 해당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7.11.22.>

④ 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1차 학기초 지정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⑤ 학점인정은 학과장이 인정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7.11.22.>

제3절 수강신청 및 수업 출석

제18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는 당해년도 학사력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업 출석)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절 학점 및 성적

제20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료 학점) 예비과정은 42학점 이상, 석사학위과정은 88학점(학과에서 지정한 필수 과목 포함)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제22조(교과목 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을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과목 성적의 정정) ① 본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과목 취득학점이 F인 경우 해당 교과목은 취득학점 및 평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종합시험

제1절 종합시험

제24조(시험범위 및 방법) 종합시험은 교회법전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며, 필기 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제2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79학점 이상을 평균 3.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2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제2절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기준

제27조(응시신청)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제의뢰)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을 학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을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1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재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시험은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1절 논문지도교수

제3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차 학기 등록 시에 학과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위의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4조(논문지도교수 승인) 해당 학생은 제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36조(학위논문계획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 지도 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승인절차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7조(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제38조(제출절차)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고 3부

4 소정의 논문심사료

제39조(논문제출시한) 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의 원고는 11월중에 본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의 체제와 규격) 석사학위논문의 체계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논문 중간발표) ① 대학원장은 논문제출 예정자에게 논문제출 학기의 중간에 중간 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논문 중간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논문심사

제43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맡는다.

제44조(논문심사위원회의 자격) 논문심사위원회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제45조(논문심사 및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

제46조(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표”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표”와 심사내용의 종합결과를 기재한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 사정기준)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의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7장 학위 수여

제48조(학위 및 이수증 수여)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공동 학위에 관한 사항은 협정교와의 협의에 따르며 별도의 공동 학위기를 수여 한다.

제8장 공개강좌

제49조(개설)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등록) ① 공개강좌의 입학자격, 개설과목 또는 제목, 수업, 수강인원, 수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공개강좌 및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수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제52조(장학금)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53조(징계)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교회법대학원운영위원회

제54조(조직) 본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학부장, 학과장 및 사무를 수행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5조(학과장) 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본 대학원의 전공부분 학사에 관한 다음 직무를 담당한다.

1. 학사지도
2. 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3.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기타사항

제56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대학발전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입학, 제적, 자퇴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4조, 제4조의 2,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1조)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교회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 교회법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교회법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사 ○ ○ ○

가톨릭대학교

학위번호 :

교회법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7. 3. 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인사, 기관, 단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장학업무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처장은 장학기금 조성과 예산배정을 담당한다.
2. 사무처장은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3. 교회법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그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본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5조(장학위원회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선발, 수혜기간, 지급액의 심의 결정
3.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장학금의 종류와 자격)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신청방법) ①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형식으로 장학금을 수혜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평균평점 3.00 미만)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9조(장학생의 확정) 장학생의 확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확정한다.

제10조(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1. 본 규정 제8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직자 및 퇴학자

제12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심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

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
기쁨장학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가톨릭 성직자 및 수도자
희망장학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30%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상기 외 가톨릭신자

* 상기 지급액은 상한선이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회법대학원장이 확정한다.

* 장학금 중복 수혜 시, 한 학기 장학금의 합계액은 수업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

III. 학사관리

1. 학기별 주요 학사제도 안내
2. 기본 이수 학점
3. 종합시험
4. 석사학위청구논문
5. 수강신청
6. 등록금 반환
7. 장학금 제도
8. 학교생활 안내

1. 학기별 주요 학사제도 안내

학기	주요 학사제도	
1차	입학	17
2차	-	17
3차	지도교수승인서 제출	16
4차	-	18
5차	종합시험 응시신청서 제출 및 응시	13
6차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7
	계	88

2. 기본 이수학점

1) 논문학위취득 ??

수료학점 (기본이수학점)	추가 이수학점	총이수학점
88	4(논문4)	92

2) 석사학위과정

대학원	학과·전공	학위종별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교회법석사

3. 종합시험

구분	내용
응시자격	5학기 이상 이수자로 7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시험범위	교회법전 전반
시험방법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
시험시기	매년 10월 중
신청방법	응시신청서와 응시료 제출
합격기준	80점 이상(100점 만점)
재시험	재시험 응시 횟수 제한 없으나 재학년한 내에 모두 합격하여야 함

4. 석사학위청구논문

(1) 논문지도교수 승인

- 3차 학기 등록기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논문지도교수 변경 :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학위논문계획서

- 제출자격 :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논문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3) 석사학위청구논문

- 제출자격 : 하단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①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②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③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
-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할 제반 서류
 -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 ② 논문지도교수 추천서 1부
 - ③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논문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논문)
 - ④ 소정의 논문심사료

- 논문 제출시한 :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논문원고는 11월 중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5. 수강신청

(1) 학기당 이수학점

- 한 학기당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2) 학점 인정

- 예비과정생의 경우, 한국천주교회의 주교회의 산하 ‘가톨릭교리신학원’ 및 수도자장상연합회 산하 ‘수도자신학원’, 또는 각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설립된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함
 -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20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필수 외국어 과목을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공인된 어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최대 3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음

(3) 수강신청

-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ac.kr>)에 접속 → Trinity(트리니티) 클릭 → 원스텝 → 마이메뉴 → 대학원 수업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 저장

6.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추가등록기간 이내의 휴학	납입금 전액
학기개시일(입학일) 30일 경과 전 휴학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2선까지만 허용)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휴학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본교 “휴학·복학·제적 규정” 제10조에 따라 처리함

7. 장학금 제도

장학금 종류	지급액	대상자	비고
기쁨장학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40%	가톨릭 성직자 및 수도자	수혜기간 - 수업연한
희망장학금	당해학기 수업료의 30%	상기 외 가톨릭신자	

8. 학교생활 안내

1) 교회법대학원장실

위치	전화번호
IH319	02-2164-4856

2) 교회법대학원교학팀

위치	이메일	전화번호	FAX	근무시간
IH339	cukgscl@catholic.ac.kr	02-2164-6521	02-2164-4977	월 ~ 금 09:00~17:00

3) 등록

본 등록기간		추가등록기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월 둘째 주	8월 셋째 주	3월 둘째 주	9월 셋째 주

- 등록기간은 매 학년도 학사력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등록은 본 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에만 가능
- 등록기간 및 등록 방법 안내는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게시판에 게재되며, 2월 초와 8월 초에 확인할 수 있음

4) 휴학 및 복학

- 휴학 : 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가능하며, 1회 휴학 시 1년까지 가능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횟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휴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학사력 및 학교 공지사항에서 기간 확인 → 교학팀의 안내에 따라 해당양식(휴학원 혹은 복학원)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도서대출 확인(휴학원에 해당) → [교회법대학원](#)에 제출[우편 혹은 팩스(02-2164-4977)로도 제출 가능]

5) 다기능카드(학생증)발급

- 신분증 기능 외에 현금(직불)카드 기능, 도서관출입통제기능 등을 할 수 있는 카드임
- 발급절차
 - 신규발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다기능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사진 1매 제출) → 우리은행에서 발급 → [교회법대학원교학팀](#)에서 배부(메일, 가대톡 푸쉬 발송)
 - 재발급
 - 소정의 수수료(10,000원)를 지불해야 하며,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 기존 계좌를 사용하려면 가톨릭대 우리은행을 내방해야하며 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VOS팀에 신청(니콜스관 1층, 02-2164-4732 오전 9시~오후5시 근무)

6) 부속병원 이용

- 부속병원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총 8개 병원)
- 할인비율 :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의료비의 30% 감면
- 할인방법 : 의료기관에 감면번호 제출

- 감면번호 발급 방법 : [원스탑] - [마이메뉴] - [대학원학적] - [학적마스터조회]
기본 탭에서 감면번호 [SMS전송] 또는 [확인서출력] 클릭

(7) 도서관 이용

- ① 이용시간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변경 또는 휴관할 수 있음.

구 분	개강기간		방학기간		비 고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자료실/대출실	9:00 ~ 21:00	9:00 ~ 17:00	9:00 ~ 17:00	휴실	공휴일 휴실
제 1 자유열람실	6:00 ~ 23:00		휴실		2층
제 2 자유열람실	24시간 개방				5층
국제관 열람실	6:00 ~ 23:00				2층
1층 출입구	9:00 ~ 17:00				토/공휴일 폐문
2층 출입구	연중 24시간 개방				
THE CU:BE	7:00~23:00				

- ② 대출 및 반납 (문의 : 02-2164-4606)

- 가) 대출 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번호와 소장 자료실을 확인한 후 직접 도서를 찾아 대출실에서 학생증 제시 및 대출.
- 나) 반납 방법 : 반납예정일까지 대출실이나 자동대출반납기(반드시 모니터로 반납 처리 확인 요)를 이용하여 반납(딸림 자료 대출시 함께 반납).
- 다) 대출권수 및 기간 : 대학원생은 10권을 30일 동안 대출 가능.

- ③ 도서예약 (문의 : 02-2164-4609)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1인당 5권, 1권당 2인). 예약 중인 도서가 반납되면 SMS가 발송되고, 대출실에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대출. 3일 동안 대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대출권한이 주어짐.

- ④ 대출연장 (문의 : 02-2164-4606)

대출한 자료는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연장 가능. 도서관 홈페이지(도서관 서비스 → 대출도서 조회/연장)에서 본인이 직접 연장하거나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 후 대출기간은 연장한 날로부터 30일까지임.

⑤ 연체료 및 변상

반납예정일까지 미반납하면 대출이 정지되고 1일 1책 당 50원씩의 연체료 부과됨. 30일 이상 장기연체 경우, 연체료 계산 후 연체된 기간만큼 도서 대출이 정지됨. 또한 도서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본 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함.

⑥ 중앙도서관 학술정보 이용교육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을 위하여 논문작성에 필요한 학술정보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관 서비스(이용자 교육 → 학술정보이용교육)를 통해 전공별(단체) 또는 개인별 신청 가능함.

⑦ 야간대출 예약제 (문의 : 02-2164-4611)

가) 예약 신청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단과 같이 이용

- 자료 검색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도서의 우측 [야간 대출 예약]버튼 클릭
-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중 당일 16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만 대출 가능

나) 처리상태 조회 : [마이라이브러리] → [예약도서 조회/취소] → [야간대출예약]에서 조회 가능

다) 수령 방법 : 당일 폐관 후 익일 개관 전까지 도서관 정문 출입구 - 신분증 제시 수령

라) SMS 발송 : 대출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SMS를 발송함

마) 예약 취소 : 16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예약 신청/대출 불가 건은 관리자가 취소 처리함

바) 제재 : 미수령시 도서는 반납 처리되며, 예약자는 도서관 제재규정에 의하여

1차 주의/경고, 2차 3개월, 3차 이상 1년간 본 제도의 이용 자격을 정지함.

⑧ 모바일 학생증 발급방법 (문의 : 02-2164-4606)

가) 모바일 열람증은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 가능.

나) Google 플레이 스토어, Apple 앱스토어에서 '가톨릭대학교 모바일 열람증'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가능

다) 학번, 사번, 특별열람ID와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라) 기기인증은 1인 1기기 원칙으로, 기기변경 시 별도 요청이 필요

(타인 학생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도서관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음)

마) 모바일 열람증 어플을 통해 도서관 공지사항을 확인. (모바일 열람증 어플 > 공지사항 클릭)

(8) 교회법대학원 회의실 The Canon Law Faculty Meeting Room

① 위치 : IH305호 ② 전화번호 : 교회법대학원 02)2164-6521

(9) 기타 후생시설

구 분	위 치	편의시설명	이용시간	전화
인터넷서널 허브 (IH관)	1층	카페베네	주중) 08:00 ~ 20:00 토요일) 08:00 ~ 17:00	070-7490-2401
		GS25(편의점)	07:00 ~ 23:00 (연중무휴)	032-347-9081
		우리은행	평일) 09:00 ~ 16:00	032-342-2641
		안경점	주중) 09:30 ~ 18:30	02-2164-4041
		맘스터치	주중) 10:00 ~ 20:00 토요일) 10:00 ~ 15:00	010-5557-2623
		헬스장	평일) 06:30 ~ 22:30 토요일) 09:00 ~ 18:00	032-342-5406
		기숙사 식당	조식) 07:30 ~ 09:30 중식) 11:00 ~ 14:00 석식) 17:00 ~ 19:30	02-2164-5401
		통신 대리점(유아이)	주중) 09:30 ~ 19:00	-
	16층	헬로베트남/북카페	주중)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08:00 ~ 20:00	02-2164-4726
니콜스관 (N관)	4층	커피전문점(Cafe 하랑)	주중) 08:00 ~ 18:00	02-2164-4682
학생회관	1층	교직원식당	중식) 11:30 ~ 14:00 석식) 17:30 ~ 19:00	02-2164-4729
		CU(편의점)	주중) 08: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10:00 ~ 15:00	032-345-081
	2층	학생식당	10:00 ~ 19:30	02-2164-4736
		대학서적	주중) 09:00 ~ 19:00 토요일) 09:00 ~ 13:00	032-346-0814
중앙도서관	1층	도서관 카페드림	주중) 08:00 ~ 20:00 토요일) 09:00 ~ 16:30	032-347-9950
기순관 (G관)	지하 1층	COPY & POD CENTER(교내복사점)	주중) 08:30 ~ 20:30 토요일) 09:00 ~ 13:00	02-2164-4725
	1층	커피동물원	주중) 08:30 ~ 19:00	02-2164-4721
		보건실	09:00 ~ 20:00	02-2164-4126

(10) 주차장 안내 : 정기권 발급(02-2164-4632)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본인 신분증 2)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 1부 *추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가족 차량의 경우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구입장소	IH102호 주차사무실 : 정기권 구입기간 동안 09:00 ~ 19:00까지 판매함
주차요금	월 10,000원 / 학기 50,000원 / 년 100,000원 ※ 연 단위 정기주차권 구매 시 10% 할인 적용

(11) 증명서 발급(학생지원팀 : 02-2164-4500, 4732)

① 증명서 종류

성적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장학금수혜증명서

② 증명서 수수료 : 국문 1통 - 600원 / 영문 1통 - 1,000원

③ 증명서 발급방법

가) 창구 발급 : 학생지원팀(니콜스 1층, N109) 근무시간 내(평일 9:00 ~ 17:00)
내방하여 발급/수령.

나) 자동발급기 발급 : 학생지원팀 앞 *8:00 ~ 22:00 가동

다) 인터넷 증명 발급 : 가정에서 직접 출력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링크센터 -> 증명발급 -> 인터넷증명발급 로그인
-> 증명 신청 후 신용 카드 결제, 계좌이체, 핸드폰 요금 가산 결제 후 출력
(89학번 이전 입학생은 발급 불가, 영문성명이 없을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 불가)

라) 동사무소 Fax 민원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및 증명 신청 – Fax 처리됨.

마) 인터넷 신청 발급 : 하단과 같이 신청 및 요금 송금 후, 원하는 주소로 우편 발송됨.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링크센터 -> 증명발급 -> 인터넷증명신청(우편발송)

IV. 교회법대학원 교과과정

1. 전공 소개
2. 교과 과정
3. 전공 과목 해설

1. 전공 소개

■ 교회법학과

가톨릭대학교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하여 양질의 교회법 전문가의 효율적인 양성을 수행하며, 사제의 평생교육과 교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본 대학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수업은 그 내용 뿐 아니라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학사 운영을 하며,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원서를 강독할 능력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대학원의 설립으로 가톨릭 대학교는 국내 교회법 전문가들의 학술 활동과 출판 등 교회법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교수 소개

교수명	직위
한영만	교수
박희종	
안세환	부교수
지용식	

2. 졸업 후 진로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교회법석사(J.C.L.: Juris Canonici Licentia) 인증 절차 추진 중이며 J.C.L.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회법 석사학위로서 전 세계 가톨릭 교회 법원 및 교구청, 수도회 각 종 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2. 교과 과정

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CL001	일반 규범 I	전공필수	2
CL002	일반 규범 II	전공필수	2
CL003	그리스도교 신자 I	전공필수	2
CL004	그리스도교 신자 II	전공필수	2
CL005	교회의 교계 구조 I	전공필수	3

2017
교회법대학원 요람

CL006	교회의 교계 구조 Ⅱ	전공필수	3
CL007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Ⅰ	전공필수	2
CL008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Ⅱ	전공필수	2
CL009	교회의 교도 임무	전공필수	2
CL010	교회의 성화 임무 Ⅰ	전공필수	2
CL011	교회의 성화 임무 Ⅱ	전공필수	2
CL012	혼인법 Ⅰ	전공필수	4
CL013	혼인법 Ⅱ	전공필수	4
CL014	교회 재산법	전공필수	2
CL015	교회 형법	전공필수	2
CL016	소송법 Ⅰ	전공필수	2
CL017	소송법 Ⅱ	전공필수	2
CL018	특수 소송 절차 Ⅰ	전공필수	3
CL019	특수 소송 절차 Ⅱ	전공필수	2
CL020	라틴어 Ⅰ	전공필수	2
CL021	라틴어 Ⅱ	전공필수	2
CL022	라틴어 Ⅲ	전공필수	2
CL023	라틴어 Ⅳ	전공필수	2
CL024	라틴어 Ⅴ	전공필수	2
CL025	이태리어 Ⅰ	전공필수	0
CL026	이태리어 Ⅱ	전공필수	0
CL027	이태리어 Ⅲ	전공필수	0
CL028	이태리어 Ⅳ	전공필수	0
CL029	이태리어 Ⅴ	전공필수	0
CL030	법철학	전공필수	2
CL031	법신학	전공필수	2
CL032	교회공법	전공필수	2
CL033	로마법	전공필수	2
CL034	교회법원사	전공필수	2
CL035	교회법제사	전공필수	2
CL036	의료법	전공필수	2
CL037	교회행정법	전공필수	2
CL038	동방교회법	전공필수	2

CL039	지역교회법	전공필수	2
CL040	혼인 무효 소송 실습	전공필수	3
CL041	일반 혼인법	전공필수	2
CL042	세미나	전공선택	2
CL043	논문 작성	전공필수	2
CL044	교황청 문헌 강독	전공선택	2
CL045	교회법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	전공선택	2
CL046	부부의 이별과 혼인의 유효화	전공선택	2
CL047	전례법	전공선택	2
CL048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 절차	전공선택	2
CL049	혼인법 사례 연구	전공선택	2
CL050	선교법	전공선택	2
CL051	교회 재산 관리	전공선택	2
CL052	초급 라틴어 I	공통필수	2

-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최소한 8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에 79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9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논문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V. 부록

- 1.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 2. 성심교정 배지도**

1.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체제

1. 작성방법

- (1) 횡서로 국문,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 (2) 본문 글씨체 : 신명조, 줄 간격 : 200, 글자크기 : 11 Point, 정렬방식 : 혼합
- (3) 목차
 - ① 목차는 3단법(편 · 장 · 절) 적용이 무난하나, 로마자/숫자/한글 등 혼용 작성할 수도 있다.
 - ② 항목구분을 세분하여 번호를 표시할 때는 한 칸씩 안으로 들어 짜기로 작성한다.
- (4)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용 문헌과 보충 설명은 각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이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각주의 설명은 해당 면의 아래에 기재한다.
- (5) 참고문헌은 논문작성에 참고가 된 모든 문헌을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작성한다.
- (6) 부록의 내용은 주로 부가적 설명, 조사양식, 설문지, 수표, 도표, 법조문, 연표, 지도, 문서 등으로 하고, 부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이라고 쓴 별지를 앞에 붙인다.
- (7) 논문초록
 - ① 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결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인 개요를 수록해야 하며, 논문 수록 내용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한다.
 - ② 초록의 표현은 완전히 연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 ③ 본문이 국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 (8) 기타 상세한 것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지침에 따른다.

2. 논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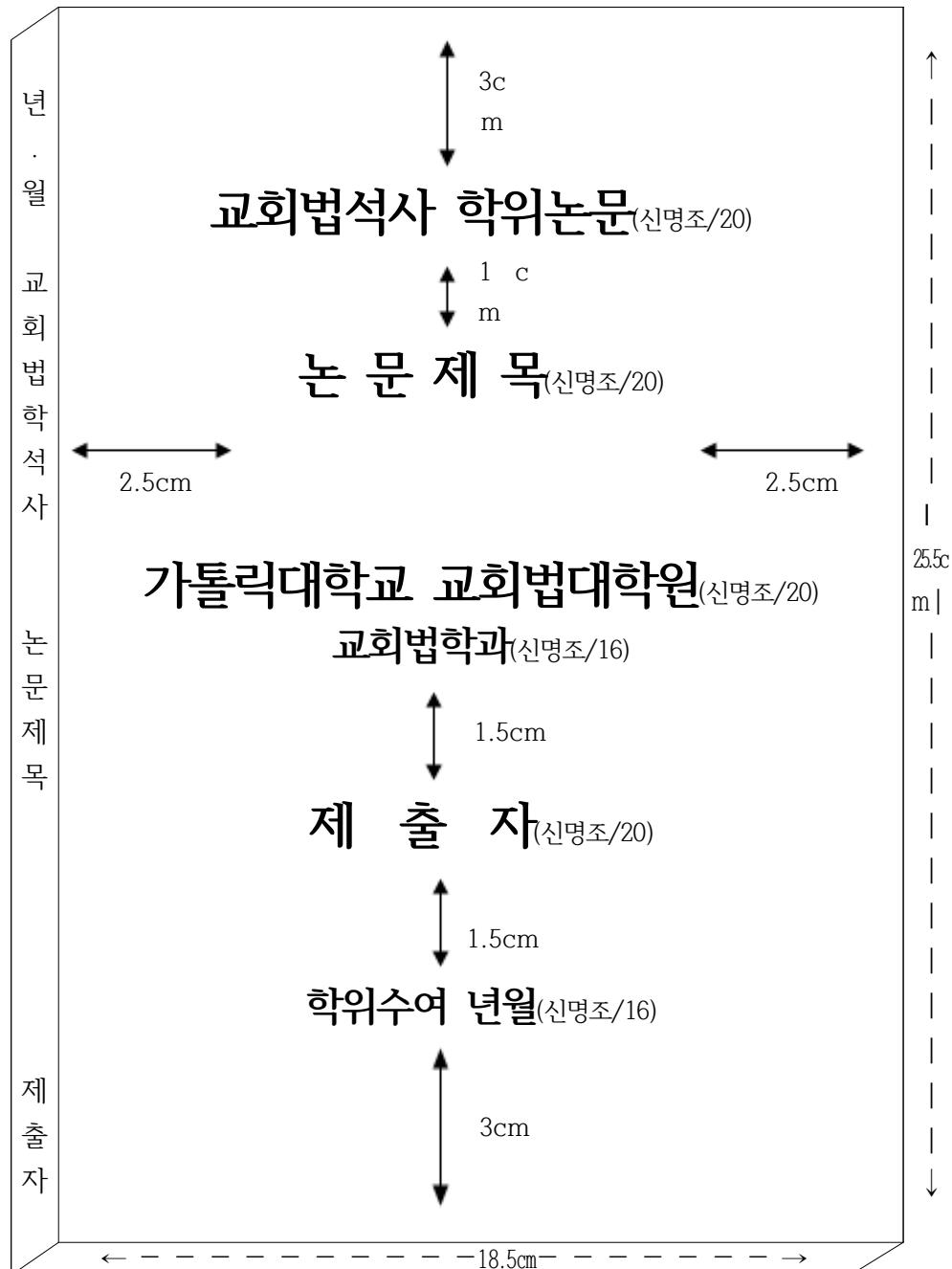
- (1) 겉표지(표제지)
- (2) 속표지
- (3) 논문제출서(한글)
- (4) 인준서(한글)
- (5) 감사의 글
- (6) 목차
- (7) 표 및 그림 목차(필요할 경우)
- (8) 논문개요(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다)-초록

- (9) 본문(서론, 본론, 결론 포함 - 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 (10) 참고문헌
- (11) 부록, 색인 기타(필요할 경우)
- (12) 영문 논문제출서
- (13) 영문 인준서
- (14) ABSTRACT(영문초록)

3. 논문 작성 양식

- (1) 용지 : 70파운드 이상의 백색 모조지 또는 이와 동등한 두께의 등사용 백상지
- (2) 제판 종류 : 46배판 (18.5cm × 25.5cm)
- (3) 제본 방식 : 클로스 양장
- (4) 지면(내용)은 가로 14cm × 세로 19cm로 한다.
- (5) 학위 수여 년월 : ○○○○년 2월(후기일 경우 8월) *겉표지 속표지에 표기
- (6) 제출 년월 : 논문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년월만 기재
예) 한글 - 2017년 9월, 영문 - September 2017
한글 - 2017년 11월, 영문 - November 2017
- (7) 논문 초록집 제작용 초록을 제본된 학위논문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8) 제출 부수 : 하드 커버 6부(1부는 심사위원 인정하여 날인 받은 것)

(1) 겉표지



(2) 속표지

교회법석사 학위논문(신명조/20)

논문제목(신명조/20)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신명조/20)

교회법학과(신명조/16)

제출자(신명조/20)

학위수여 날짜(신명조/16)

(3) 논문 제출서(한글)

한글 논문제목(신명조/20)

영문 논문제목(신명조/16)

지도 : 교수(신명조/20)

i] 논문을 교회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신명조/16)

제 출 년 월(신명조/16)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신명조/20)

교회법학과(신명조/16)

제 출 자(신명조/20)

(4) 인준서(한글)

○○○의 교회법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제출자 이름)

(신명조/20)

주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신명조/20)

인준 년 월(신명조/16)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신명조/20)

(5) 감사의 글

감사의 글 (진하게/20)

가나다라..... (본문시작, 신명조/11)

(6) 목차

목 차 (신명조/20)

I . 감사의 글.....
II . 논문개요.....
III. 본문 (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IV. 참고문헌.....
V. 부록.색인.기타(필요 경우).....
VI. 영문 논문제출서.....
VII. 영문 인준서.....
VIII. 영문 초록(ABSTRACT).....

(줄간격/350)

- * 한글 논문일 경우 맨 끝에 영문초록(Abstract)
- * 영문 논문일 경우 맨 끝에 한글초록(Ⅱ와 VIII을 바꿈)
- * 논문 작성 시 상단의 작성 요령 참조

(7) 논문 개요(논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다)

논문개요(초록)(신명조/20)

가나다라.....(본문시작, 신명조/11, 줄간격/200)

(8) 본문(서론, 본론, 결론 – 각 전공별 지정 양식에 따름)

1. 서론(신명조/20)

가나다라.....(본문시작, 신명조/11, 줄간격/200)

(9) 참고문헌

참고 문헌(신명조/20)

(신명조/11, 줄간격/200)

(10) 영문 논문 제출서

영문논문제목(중고딕/20)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CANON LAW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중고딕 13)

학위명(영문, 중고딕/16)

BY

제출자 이름(영문, 중고딕/16)

SEOUL, KOREA(중고딕/13)

제출년월(영문, 중고딕/13)

(11) 영문 인준서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Canon Law. (중고딕/13)

THESIS COMMITTEE

Chairman _____
(Kil-Dong Hong)

Member _____
(")

Member _____
(")

인준 년월 (중고딕/13)

THE FACULTY OF CANON LAW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중고딕/15)

* 심사위원 이름 위에 sign 할 수 있는 간격을 둘 것.

(12) 영문 초록(ABSTRACT)

ABSTRACT (신명조/20)

Abcdef (본문시작, 신명조/11)

초록 (초록집 발간용, 심사가 종료된 후 한글 및 영문 작성)

한글 논문제목
(영문 제목)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회법학과
(Major, The Faculty of Canon Law,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지도 : ○○○교수〉
〈Director : Prof. Kil-Dong Hong〉
제출자

초록 내용

1. 논문심사가 종료된 후 작성(한글로 작성)
2. 작성요령 : 컴퓨터 한글 (HWP 3.0 이상)로 작성
 용지선택 및 여백주기 : A4 (위쪽, 아래쪽, 왼쪽-30, 오른쪽-20)
 글자선택 및 줄간격 : 제목-크기 12, 본문-크기 10
 줄간격-130

2. 성심교정 배치도

* 교회법대학원

: 인터내셔널 허브 및 김수환추기경국제관(4번 건물) 3층(IH339)에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요람 2018

2018년 0월 00일 인쇄

2018년 0월 00일 발행

발행인 원 종 철

발행처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회법대학원 :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IH339

전화 : 02) 2164-6521 팩스 : 02) 2164-4977